

# 보 고 서

등록번호	규제법무감사팀-
등록일자	2011.7.
결재일자	2011.7.
공개구분	비공개

담 당	사무관	과 장	국 장	차 장	청 장
협조자					

제 목 : 자체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

## < 보고 요 지 >

2011년도 행정감사계획에 따라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등 3개 소속기관에 대해 실시한 자체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 I. 감사개요

- 기 간 : 2011.6.7(화) ~ 7.1(금) (기간 중 13일간)
- 감 사 자 : 행정사무관 ○○○ 등 3명
- 대상기관 : ○○○소, ○○○소, ○○○소 등 3개 소속기관
- 감사대상 : 전(前) 자체감사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
- 감사중점 : 세입·세출예산 집행, 공사 및 시설물 관리, 물품 및 유물관리, 국유재산 및 위탁관리 재산 등 적정성 여부 등

### II. 감사결과 : 총 16건(시정 3건, 기관 주의 6건, 주의 5건, 개선 2건)

- 신분상 조치 : 주의 5건
- 행정상 조치 : 시정 3건, 기관주의 6건, 개선 2건
- 재정상 조치 : 환수 2건 (3,002,230원)

### III. 조치계획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통보
- 해당 관련부서에 통보 조치

붙임 : 자체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 1부. 끝.

기 획 조 정 관  
규 제 법 무 감 사 팀

# 자체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 계획 보고

## I. 감사개요

- 기 간 : 2011. 6. 7(화) ~ 7. 1(금) (기간 중 13일간)
- 감 사 자 : 행정사무관 ○○○, 시설주사 ○○○, 행정주사 ○○○ 등 3명
- 대상기관 : ○○○소, ○○○소, ○○○소 등 3개 소속기관
- 감사대상 : 前 자체감사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
- 감사중점 : 세입·세출예산집행, 공사 및 시설물 관리, 물품 및 유물관리, 국유재산 및 위탁관리 재산 등 적정성 여부

## II. 총 평

- 전반적으로 계약업무 시 원가계산 작성, 법정요율 적용 등 기준에 맞게 적정한 원가를 산출을 하지 않아 과다하게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례가 있고, 감독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의 사유로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되는 경우가 있음
- 입찰대상 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수의계약 체결 시 단일 견적 처리, 책자 발간 시 적정한 배포 계획 미 수립 등 전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고 있음

## III. 감사결과

- 신분상 조치 : 주의 5건
- 행정상 조치 : 총 11건 (시정 3건, 기관주의 6건, 개선 2건)
  - ○○○소 : 7건 (시정 1건, 기관주의 2건, 주의 3건, 개선 1건)
  - ○○○소 : 3건 (시정 1건, 기관주의 1건, 주의 1건)
  - ○○○소 : 6건 (시정 1건, 기관주의 3건, 주의 1건, 개선 1건)
- 재정상 조치 : 환수 2건 (3,002,230원)

## IV. 조치계획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통보
- 해당 관련부서에 통보 조치

붙임 :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1부.

○○○소 : 7건 (시정 1건, 기관주의 2건, 주의 3건, 개선 1건)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비 고
<p><b>■ 용역 원가계산 부적절</b></p> <p>○과업 내 물품제작 건은 원가계산 없이 1식으로 처리하여 적정한 제작비를 산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창녕 송현동 7호분 출토 목제안장복원 학술 연구’ 사업의 경우 용역에 해당되어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각 5%, 10%이내에서 계상하여야 하나, 본건은 일반관리비 8%, 이윤 15%로 계상하여 2,481,720원을 과다 책정하였음</p>	<p>○향후 용역 발주 시 용역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법정요율에 맞는 일반관리비, 이윤적용 등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발주하여 주시기 바람</p>	<p>기관주의</p>
<p><b>■ 용역 하자보수보증금 미 납부 건</b></p> <p>○ ○○○소는 ‘순장인골 복제 및 뼈대제작(용역대금 27,000천원) 등의 용역을 완료한 후 용역수행자로부터 하자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지 않았으며, 기관내에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회계직 공무원(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고 있음</p>	<p>○향후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이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시고, 유가증권을 관리할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임명하시기 바람</p>	<p>주의</p>
<p><b>■ 학술용역 수의계약 체결 건</b></p> <p>○ 학술용역 ‘○○사람 복원 학술 연구’(계약금액 30,000천원) ‘○○사람 복원연구 인체 복원연구 인체 복원 모형 제작 및 인골연구 학술연구’(계약금액 92,000천원)을 발주하면서</p> <p>○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법시행령 제26조1항4호(특정인의기술로서 경쟁할 수 없는 경우)에 의거한 수의계약 사유로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임의로 동 조항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p>	<p>○향후 학술용역 발주 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수의계약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p>	<p>주의</p>
<p><b>■ 자료발간 계획수립 및 배포에 관한 사항</b></p> <p>○ 2008년~2010년까지 ‘한국의 고대목기’(2008/1,500부/26,700천원) 등 6건의 책자를 발간하면서, 사전 배포계획 없이 발간 수량을 결정·발간 후 관련 기관 등에 배포하면서, 6개 자료 평균 불배포 잔량이 190부에 총 1,135부가 참고 등에 보관되어 있고 불특정 개인에게도 상당 부분 배포 하고 있음</p>	<p>○향후 보고서 등 발간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발간 이전에 발간자료의 성격, 취지 등을 고려 배포처를 면밀히 검토, 발간부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시기 바람</p>	<p>기관주의</p>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비 고																								
<p><b>■ 비교(타) 견적 제도 형식적 운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의계약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 담당자가 관련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발주금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적정사업비 결정, 예산절감 등을 위해 일반적으로 2개 업체 이상에서 견적서를 받아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의 견적금액을 기초금액으로 하여 발주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나</li> <li>○ 사전에 1개의 특정업체를 미리 결정한 후, 비교 견적서는 선정된 업체에서 형식적으로 타업체의 견적서를 입수하여 제출하고 있어 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예산절감의 취지도 살리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태임</li> </ul> <table border="1" data-bbox="135 875 799 1238"> <thead> <tr> <th>견적 시기</th> <th>사업명</th> <th>계약금액 (천원)</th> <th>견적서 검토 결과</th> </tr> </thead> <tbody> <tr> <td>'09.9</td> <td>작업복 구입</td> <td>4,500</td> <td>비교 견적과 동일 필체</td> </tr> <tr> <td>'10.6</td> <td>기념 우산 제작</td> <td>4,950</td> <td>비교 견적에는 규격 없이 금액만 기재</td> </tr> <tr> <td>'10.7</td> <td>유물취급용 장갑 구입</td> <td>1,238</td> <td>타 견적과 필체동일</td> </tr> <tr> <td>'10.7</td> <td>창녕 영산고분군 발굴현장천막 설치</td> <td>4,829</td> <td>타 지역 업체 견적 첨부</td> </tr> <tr> <td>'10.7</td> <td>보존처리 용품 구입</td> <td>250</td> <td>한 업체에서 2개 견적서를 동시에 팩스 송부</td> </tr> </tbody> </table>	견적 시기	사업명	계약금액 (천원)	견적서 검토 결과	'09.9	작업복 구입	4,500	비교 견적과 동일 필체	'10.6	기념 우산 제작	4,950	비교 견적에는 규격 없이 금액만 기재	'10.7	유물취급용 장갑 구입	1,238	타 견적과 필체동일	'10.7	창녕 영산고분군 발굴현장천막 설치	4,829	타 지역 업체 견적 첨부	'10.7	보존처리 용품 구입	250	한 업체에서 2개 견적서를 동시에 팩스 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후부터는 적정한 사업비 결정,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관련 업체2 곳에 견적을 받는 경우 사업내용 및 사용자재의 규격 등을 명확히 한 후 동일한 조건에서 공정한 견적이 실시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 등 사업 발주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li> </ul>	<p>개선</p>
견적 시기	사업명	계약금액 (천원)	견적서 검토 결과																							
'09.9	작업복 구입	4,500	비교 견적과 동일 필체																							
'10.6	기념 우산 제작	4,950	비교 견적에는 규격 없이 금액만 기재																							
'10.7	유물취급용 장갑 구입	1,238	타 견적과 필체동일																							
'10.7	창녕 영산고분군 발굴현장천막 설치	4,829	타 지역 업체 견적 첨부																							
'10.7	보존처리 용품 구입	250	한 업체에서 2개 견적서를 동시에 팩스 송부																							
<p><b>■ ○○고분군 발굴사업 추진 부적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3월 ○○고분군(경상남도 기념물 제168호) 발굴조사(3,014㎡) 사업에 대해 ○○군과 50,000천원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면서, 발굴비용이 부족하게 되자 부족한 발굴비용 확보를 위해 2010.5월 국비 95,000천원을 추가 투입하여 자체 발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본소 소장에게 보고한 후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시행, 2011년.5월 현재까지 국비 188,025천원이 추가 투입된 상태임</li> <li>○ 문화재보호법 제55조(발굴의 제한) 제⑦항에 의하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발굴하도록 할 수 있다--중간생략--이 경우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 시행자가 부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li> <li>○ 지방문화재인 영산 고분군 정비를 위해 창녕군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위탁받은 대행 발굴 사업이 연구소 자체발굴사업으로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발굴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함</li> </ul>	<p>주의 및 개선 (본소에 통보)</p>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비 고
<p>의뢰한 발굴정비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면서, 발굴비용 부족을 이유로 연구소 자체발굴사업비(국비)를 투입 하면서 자체 학술발굴사업으로 변경, 사업을 시행한 것은 적절치 못한 예산 집행에 해당된다고 봄</p>		
<p><b>■ 시설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6월 노후 된 청사 옥상(135㎡) 방수공사를 주) ○○건설(대표 ○○○)과 6,820,000원에 수의계약을 체결 시행 완료(6.29일)하였으나, 현장 확인 결과 우레탄 바닥 방수재(두께 3mm)에 균열이 발생하고 틈으로 물이 침투하여 방수재가 들떠 있는 등 누수의 우려가 있는 상태로 관리되고 있어 하자보수 조치가 필요한 상태임(하자 보증 기간 : 2012. 6.28일까지).</li> <li>○ 2002년 샌드위치 판넬로 옥상에 가설창고(67㎡)와 본관 동남측 벽면에 PEG함침실(37㎡)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나 동 시설 건축시 ○○시에 건축허가 등의 사전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하여 무허가 건축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등기부 등본 등재, 건축물 화재보험 등의 대상에도 편입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는 상태로 관리되고 있음</li> <li>○ ○○○소 신축당시 부지 내에 테니스장을 만들어 사용하였으나, 2007년부터 민원 등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아 현재는 테니스장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용도 없이 관리되고 있으나,</li> <li>○ 동 지역은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어 부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연구소 자체 시설증축 등의 사업이 확정될 때까지는 주차장 또는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량하게 시공된 옥상 방수공사를 즉시 재시공(하자보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li> <li>○ 무허가 건축물인 가설창고 및 PEG함침실을 건축허가 조건에 맞도록 설계 및 보완한 후 건축협의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li> <li>○ 장기 미 사용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테니스장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 실시하여 주시기 바람</li> </ul>	<p>시정 및 개선</p>

○○○소 : 3건 (시정 1건, 기관주의 1건, 주의 1건)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비 고
<p>■ 시설공사 안전관리·감독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풍 곤파스 피해지역 피해수목 긴급복구 정비사업’을 수행하면서 공사 원가계산서에는 891,990원의 안전관리비를 책정은 하였으나, 안전사고 예방(안면보호대, 무릎보호대, 안전모 등 미착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미사용 안전관리비 891,990원을 정산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시공 시 적절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미정산된 안전관리비는 환수하시기 바람</li> </ul> <p>(환수금액 891,990원)</p>	<p>주의 및 환수</p>
<p>■ 비정규직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세액 미징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규직 근로자의 급여와 중간 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2008.01.01부터 2011.5월 현재까지 근로소득 세액(근로소득세, 주민세) 1,979,710원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급여와 중간 퇴직금 정산 시 소득세법의 따라 원천징수를 하시기 바람</li> </ul>	<p>기관주의</p>
<p>■ 공간 부족에 따른 교통 혼잡 및 관람객 불편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왕릉의 인지도가 제고된 이후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말 및 공휴일에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관람객이 집중되고 있음. ‘11.5.5일에는 4,754명이 관람하였으며 ‘11.5월 중 일요일 평균 관람객 수가 3,000명이 넘고 있으나 주차 공간은 81대(대형 9대, 소형 72대)로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li> <li>○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관람객 들이 용릉 앞 좁은 도로(중앙선 없는 1차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이로 인해 차량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용릉관리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관람객간 다툼으로 이어져 매주 혼란이 지속되고 있어 용릉관리소의 대외적 이미지 하락과 직원들의 주말 근무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임</li> <li>○ 따라서 사유지 매입을 통한 주차공간 확대 또는 용릉앞 도로 체계 개선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li> <li>○ 아울러, 1일 기준 2,000원(소형)을 부과하는 방식은 주말에 주차시간을 필요이상으로 길게하여 협소한 주차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초과시간 할증제 등 주차요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말에 일정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요금제 도입 등 주차요금 제도 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고, 주변 사유지 매입, 도로체계 개편 등 근본적인 주차공간 확보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li> </ul>	<p>시정 및 개선</p>

○○○소 : 6건 (시정 1건, 기관주의 3건, 주의 1건, 개선 1건)

지적내용	처분요구	비 고
<p><b>■ 편의시설(휴게의자) 설치 공사에 관한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청에서 '07년 12월 발간(○○과)한 ○○사-왕릉 공공디자인 매뉴얼 상의 A형 벤치를 '08년 12월부터 '10.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주)○○○과 수의 계약하여 벤치 65개를 제작 설치한 사실이 있음</li> <li>○ 디자인별 공사비 내역서가 포함된 공공디자인 매뉴얼이 공·능 및 유적기관에 배포되면서 ○○○소에서는 동 내역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종료된 상태임</li> <li>○ 감사기간 중 제작된 벤치 및 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매뉴얼 및 설계도서에는 오일스테인 칠을 한 방부목 위에 「무기질 코팅제」를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오일스테인 칠을 한 방부목 위에 「우레탄 바니쉬」 칠을 하였음</li> <li>○ 공공디자인 매뉴얼 설계자(○○○ 교수팀)에게 문의한 결과 매뉴얼 상의 무기질코팅제(원랩코트)는 국내에서는 1개 업체가 독점수입하고 있는 제품으로 ㎡당 공사비가 35,000원에 이르는 고가의 제품이나,</li> <li>○ 시공사측에서는 무기질코팅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반 내후성 도료인 우레탄바니쉬(㎡당 추정가격 6,000원)를 사용하여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사실이 있음</li> </ul> <p>※ 공사비 차액(추정) : 5,420천원          - 의자 65개×2.5㎡×29,000원=4,712천원×1.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 내역 및 설계서와 다른 도료로 시공된 휴게의자(A형 벤치) 65개에 대해 보완시공 조치하시기 바람(도료는 설계상의 무기질 코팅제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함)</li> </ul>	<p>시정 및 개선 (재시공)</p>
<p><b>■ 입찰 공고문 작성 부적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2월~5월에 계약 체결한 추정금액 20,000천원(부가세제외)을 초과하는 3건의 공사에 대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공고를 하고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87.745%보다 높게 투찰한 자 중 제일 근접(제한적최저가)한 자를 계약자로 선정한 사실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후부터는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고문 작성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li> </ul>	<p>기관주의</p>

지적내용	처분요구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나 상기 입찰 공고문의 낙찰자 선정기준에는 「최저가 입찰자 중 심사를 통하여 종합평정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한다」 라고 공고함으로써 규정에 위배되는 공고를 3차례 실시한 사실이 있음</li> </ul>		
<p><b>■ 국유재산 매각 방법 부적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영릉 임내 수종갱신’ 사업을 여주산림조합과 계약을 체결(‘09.6.18 / 계약금액 76,500천원)하고 사업을 수행 하면서, 별채한 수목(리기다, 참나무 등) 11,692주를 처분함에 있어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처분한 후 세입조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li> <li>○ 공사 과정에 추가된 조림사업의 소나무 대금(3,750주) 46,805,359원으로 직접 상계 처리한 사실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국유재산을 매각 할 때에는 다음년도 예산편성 시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여 주시고, 매각 후에는 반드시 국고 세입조치 하시기 바람</li> </ul>	주의
<p><b>■ 일반용역 인건비 단가 산정 부적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영릉 과거 현재 미래 사진전시회 개최’ 용역(계약금액 26,400천원 ‘10.4.21),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전시회 개최’ 용역(‘10.6.24 / 계약금액 10,000천원)을 발주하면서 거래실례가격 또는 타 업체 비교견적을 통하여 적정한 단가를 산정, 예산의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는 것이 원칙이나,</li> <li>○ 본 용역 인건비 적용과 연관성이 없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109호)에 따른 특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임금 단가를 적용한 사실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역 발주 시 원가계산은 「예정 가격 작성기준」에 근거하여 거래 실례가격, 고시 단가(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등을 참조하시어 규정에 맞게 발주 하시기 바람</li> </ul>	개선
<p><b>■ 「견적입찰 세부기준」 미 적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4월 19일 영릉 연못 난간 설치공사 등 추정가격 20,000천원(부가세 제외)을 초과하는 3건의 공사·용역에 대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부터는 적정한 사업비 결정,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관련 업체2곳에 견적을 받는 경우 사업내용 및 사용지재의 규격 등을 명확히 한 후 동일한 조건에서 공정한 견적이 실시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 등 사업 발주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li> </ul>	기관주의



지적내용					처분요구	비고
구분	건명	계약일자	발주금액 (계약금액)	비고		
용역	○○○의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사진전시회	2010.4.21	26,400천원 (26,400천원)			
공사	○○ 비각 보수공사	2010.10.29	19,900천원 (22,803천원)			
공사	○○ 연못 난간 설치공사	2011.5.3	25,000천원 (27,258천원)			
<b>■ 회계업무 처리 부적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대표 윤상구)과 영릉 비각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10.9.20 / 계약금액 19,900천원) 미 사용된 안전관리비, 폐기물처리비를 지급함 <b>(총 540,270원 환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비 437,970원, 폐기물처리비 102,300원</li> </ul> </li> <li>○ 직원 출장비 지급 시 일비 과다 지급 <b>(총 1,570,000원 환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유산답사 차량임차 시 일비 과다 지급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년 ○○○ 등 29명(1일) : 290,000원</li> <li>· 2010년 ○○○ 등 32명(2일) : 640,000원</li> <li>· 2011년 ○○○ 등 32명(2일) : 640,000원</li> </ul> </li> </ul> </li> <li>○ 비정규직 퇴직금 세액 미공제 <b>(총 504,370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년 ○○○ 등 7명 (소득세 204,800원 주민세 20,440원)</li> <li>- 2010년 ○○○ 등 11명 (소득세 253,800원, 25,330원)</li> </ul> </li> <li>○ 자문료, 강사료 등 지급 시 세액 미공제 <b>(총 358,000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전/중 등 13명 (소득세 246,000원 주민세 24,600원)</li> <li>- 2011년 ○○○: 소득세 80,000원, 주민세 8,000원</li> </ul> </li> </ul>					○향후 회계업무 처리 시 법과 규정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사용한 안전관리비, 폐기물처리비와 과다 지급된 일비는 환수하시기 바람 <b>(환수금액 : 2,110,240원)</b>	기관주의 및 환수